

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2007. 1.

발 의 자 : 김영호 의원 외 6인

1. 제안 이유

- 「구미시도시계획조례」 제46조제2항에 의하면 미관지구 내에서는 도로에서 2m 이상을 후퇴하여 건축이 가능하고 후퇴선 부분에 대하여는 주차장·화단 설치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해 놓은 것을
-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도시 미관에 지장이 없는 자주식 주차장과 화단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「구미시도시계획조례」 일부를 개정코자 함.

2. 주요 내용

「구미시도시계획조례」 제46조제2항에서 미관도로 건축선 후퇴부분에 설치가 불가능한 항목 중 “주차장·화단” 에서 “주차장(철골조립식, 기계식 주차장에 한함)” 으로 하고, 동조동항 제2호 조경식수를 삭제함

3. 참고 사항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3조

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제2항중 “주차장·화단”을 “주차장(철골조립식, 기계식주차장에 한함)”으로 하고, 동조동항 제2호를 삭제하며, 동조동항 “제3호”를 “제2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개정 이유
제46조(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) ① (생략)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,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「건축법시행령」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·담장·계단·<u>주차장·화단</u> 그밖의 이와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(생략) <u>2. 조경식수</u> 3. (생략)	제46조(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주차장(철골조립식, 기계식주차장에 한함)</u>----- 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 <u>2 (현행과 같음)</u>	시가지 교통난 해소

참 고 자 료

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73조 (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) ①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·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 다만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(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), 부속건축물의 규모, 건축물·담장 및 대문의 형태·색채,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·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위치·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.